

이스란 제1차관,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 상황 점검

- 입양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단계별 대기 해소 당부-
- 입양분과위원회 신속한 결연심사 및 운영 효율화 등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4월 3일(금) 13시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내 입양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제1차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가정환경조사·결연심사 등 주요 입양 절차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양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특히 기본교육 및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의 병목현상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확대(월2회 → 4회), 가정환경조사 담당인력 확충 등 예비 입양가정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들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 예비입양가정 605정 중 기본교육 231가정(38.2%), 가정환경조사 152가정(25.1%) 대기(26.3월 기준)

아울러, 정부도 필요한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안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1차관은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별도 면담을 하고, 절차 지연 해소,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결연심사와 관련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입양신청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분과위원회 확대 운영(월1회 → 2회)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하고 인력 보강과 운영 개선을 통해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아동권리보장원 현장방문 개요
 2. 공적입양체계 개요
 3. 국내 입양절차 주요 개선사항
 4. 국내 입양 절차별 입양대기 현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정책팀	책임자	팀장	윤장열 (044-202-3550)
		담당자	사무관	강혜경 (044-202-3555)



□ 방문개요

- (목 적) 입양절차 개선 대책 발표(3.19.) 이후 운영현황 점검 및 격려
- (일시·장소) '26.4.3.(금) 13:00, 아동권리보장원 10층 원장실
-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구아동정책관,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등 12명

< 아동권리보장원 현황 >

- (설립목적)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함(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설립일) 2019. 7. 16.
- (조직) 5본부 12부 2팀, 정원 198명(임원 2명, 직원 196명)
- (주요연혁)
 - ('19.1.15.)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근거 마련(「아동복지법」개정법률 공포)
 - ('19.7.16.)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및 1차 통합(입양, 자립, 드림스타트, 실종)
 - ('20.1.1.) 아동권리보장원 통합 완료(학대, 돌봄, 가정위탁, 디딤씨앗)
 - ('20.1.29.) '기타공공기관' 지정(재정경제부)
 - ('25.7.19.)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00 ~ 13:15	15'	입양절차 추진상황 및 개선대책 조치상황 보고	부원장
13:15 ~ 13:30	15'	의견청취 및 당부사항	제1차관
13:30 ~ 13:45	15'	국내입양분과위원장 면담	
13:45 ~		이동	

붙임2

공적입양체계 개요

□ 추진 배경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13) 이후 10년만에 비준을 위한 입법*(23.7.18)
→ 아동 입양은 공공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25.7.19.시행)

* 「입양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

** 법 시행에 따라 헤이그협약 비준 절차도 완료하여 '25.10.1일부터 발효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입양 절차 전반을 담당

(개편) 민간 입양기관은 업무 종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양 결정·관리

-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가 결정, 이후 입양이 완료될때까지 지자체가 보호(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하며 양육상황 점검
- * 다만, 입양대상아동 중 국제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결정
- 예비입양부모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에 신청, 복지부(위탁: 대한사회복지회)는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방문·대면) 실시
- 예비입양부모 자격 및 아동-양부모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결연 후 최종 입양허가는 법원이 결정, 필요 시 허가 전 임시양육 결정
-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사후관리는 복지부(위탁: 대한사회복지회)가 대면 수행
- 국제입양*은 복지부(보장원)가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수행

*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아동 입양도 관장

< 공적입양체계 개편 전·후 절차 >

절차	보호대상 아동결정	양부모 신청·상담	입양 전까지 보호·후견	양부모가정·조사 (보고서 작성)	양부모 적격 및 결연심사	법원허가	사후관리
개편 전	시군구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가정법원	입양기관
개편 후	시군구	복지부 (보장원위탁)	시군구	복지부 (민간위탁)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보장원)	가정법원	복지부 (보장원·민간위탁)

◇ (문제점) 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예비입양부모 신청이 집중된 가운데, 순차적 절차 운영과 교육·조사 수행여건 제약으로 일부 속도가 더딘 상황

⇒ (개선) ① 현 시점에서의 주요 병목발생 요인(예비양부모 교육, 가정조사) 해소
 ② 각 입양절차를 점검하여 필수적 절차는 충실히 수행하면서 행정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

⇒ (기대효과) 예비양부모의 편의성 제고 및 입양절차의 안정적 운영 추진

<국내입양절차 개선안>

구분	절차명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1단계	입양신청	신청방식 개선	등기	온라인
2단계	범죄경력조회	-	-	-
3단계	기본교육	교육운영 확대	월2회	월4회
4단계	가정환경조사	조사인력 확충	13명	단계적 확충 추진
5단계	자격심의	분과위원회 운영확대	월1회	월2회
6단계	결연심의	분과위원회 운영확대	월1회	월2회
7단계	결연통보 및 수용의사 확인	처리기간 규정	처리기간 부재	처리기간 규정
8단계	아동첫만남 및 결연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시기 개선	아동 첫만남 이후	아동 첫만남 이전
9단계	임시양육결정 및 법원허가	임시양육결정기간 단축 협의 등	임시양육 결정4개월	실무협의 체계구축

붙임4

국내 입양 절차별 입양대기 현황

(‘26.3월기준)

구 분	절차명	주요내용	예비양부모(가정)	입양대기아동(명)
계			605	287
1단계	입양신청	입양희망자 → 보장원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보완	65	213
2단계	범죄경력 조회	보장원 → 경찰청에 공문 의뢰·회신	33	
3단계	기본교육 수강	회당 18가정씩 수강(11시간 이수必)	231	
4단계	가정환경 조사	보장원 의뢰 → 대한사회복지회 가정환경조사	152	
5단계	자격심의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	77	
6단계	결연심의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	18	44
7단계	결연통보	결연결과 통보 및 결연수용의사 확인	6	6
8단계	아동과 첫만남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첫만남 지원 및 결연확인서 전달	12	13
9단계	법원허가	법원,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 허가	11	11